

연구업무규정 시행세칙 신규대비표

| 개정 전 | 개정 후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제20조(시험분석료) ① ~ ③ (생략) (신설) | 제20조(시험분석료) ① ~ ③ (현행과 동일) ④ 시험분석료 잔액 중에서 연구책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대학의 연구활동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에 지원할 수 있다. |